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-111호

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2. 17.

산업통상부장관

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결과

1. 제품명 :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
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투수성 블록
2. 모델명 :
• 종류 · 등급 · 호칭 또는 모델: -
3. 적합성 인증기관: 산업통상부
4. 인증일: 2025. 12. 17.
5.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:
-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
-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, 적합성 인증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
- 기존 KS인증의 사후관리 체계에 따라, 정기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인증제품에 대한 광고 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
6.「산업융합촉진법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:
-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5조
7. 참고사항:
-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, 상기 표기된 “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”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심사기준(적합성인증기준)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
-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(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)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보통 블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
-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KS F 4419(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)의 요구사항을 자극제를 활용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투수성 블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

끝.